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540호 2020. 9. 10(목)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3호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0-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대표 배일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5,6블록
 - 나. 대지면적 : 52,663.36㎡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359,211.9491㎡ (지하4층, 지상47층)
 - 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1,789세대, 오피스텔 1개동 529호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 1,017,342,502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01. ~ 2023. 01. 31.
5. 변경사항
 - 가. 근린생활시설(301·302동) 옥상 조경 변경
 - 나. 주출입구, 부출입구 상호 변경(주거)
 - 다. 장애인 화장실 구획 변경 및 상가 출입구 점자블록 추가 설치

- 라. 지하 4·3층 기계실, 전기실 등 구획변경(비주거)
- 마. 실내재료 일부 변경
- 바. 단위세대 발코니 창호 및 구획 변경
- 사.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등) 구획 변경
- 아. 오피스텔 단위세대 구획 및 부대복리시설 구획 변경
- 자. 인접도로 높이 변경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층고 등 변경
- 차. 기초 일부 변경
- 카. 누락 및 오기 사항 정정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0-153호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명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2. 목 적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 10,050원(시급)**
 - 생활임금 적용항목 : 기본급+제수당(통상임금)
 -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제수당 포함 (단,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 수당 제외)
 - 생활임금 적용대상
 -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사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5. 기 타

- 서구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 : 기업지원일자리과(일자리정책팀, 560-0862)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0-135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20. 9. 7. ~ 2020. 9. 21.(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68부1401 외 4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68부1401	이*훈	2020.08.03	
2	인천70거1970	신*호	2020.08.11	
3	87나7783	남*미	2020.08.13	
4	62고7788	박*현	2020.08.14	
5	18소0102	권*빈	2020.08.1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36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모 접수된 제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심사기준(안 제4조)
-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5,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모 접수된 제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심사기준(안 제4조)
-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해 구민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주민선호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부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부심사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배 점 기 준		
	우 수	보 통	미 흡
실행가능성(20)	20~15	14~10	9이하
창 의 성(20)	20~15	14~10	9이하
효율성 및 효과성(20)	20~15	14~10	9이하
계 속 성(15)	15~13	12~10	9이하
적 용 범 위(15)	15~13	12~10	9이하
주민투표(10)	1등(10)	2등(9)	3등(8)
최종평가점수	100점		

※ 단, 심사자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불채택

[별표 2]

부상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 급	인원	보상금	포상	비고
최우수	1	1,000천원	구청장	채택
우수	1	700천원	구청장	채택
장려	1	500천원	구청장	채택
노력	3	200천원	구청장	채택

※ 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수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인천광역시 서구청			
③ 동일·유사 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있음(제출기관: _____, 제출일시: _____)			
④ 주제인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여도(%)
⑥ 처리결과 통보방식	[] SMS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우편	주소: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여부		()년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제인자				(서명 또는 인)
※ 국민신문고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p>⑦ 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문제점,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 타지역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p>⑧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소요예산 포함, 비예산 가능) ○ 추진 방법 등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p>⑨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 생활불편 해소 ○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 ○ 구민생활 개선, 구민 관심도 제고 등 사회적 파급효과 등

작성 방법

-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 ③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의 건 수 령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3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9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최근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증가됨에 따라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및 기준에 대한 규정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
-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도시재생경관과)에게 2020. 10.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심곡동) / ☎ 032-560-4593, FAX 032-560-274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9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 나. 최근 공공조형물의 건립이 증가됨에 따라 무분별한 건립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안 제1조 ~ 제3조)
- 나.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및 기준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제7조)
- 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안 제8조 ~ 제11조)
- 라.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12조 ~ 제13조)
- 마.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안 제14조 ~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

-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건립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작품성·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인근 지역의 조망권 저해요인 여부

②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규격, 안정성 확보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내부위원은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의와 실행심의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신청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2. 공공조형물 등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옮겨 설치하거나 철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 공 조 형 물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설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설주체		관리기관	
건설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 · 기념비 · 조형물의 전면사진 (5 " × 7 ")

